

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4-6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(가칭)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재검토 결과, 건립 효과 저조 및 조성 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미추진 결정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(가칭)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(53억원, 2022년 감정평가 탁상자문) 및 건물신축비(41억원,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)가 90억원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전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투자 대비 인프라 확충 효과가 저조하고 구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미추진 결정됨.

나. 토지매입비(서교동473-43, 383.5㎡, 국유지)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5,281,340천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5,281,340천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
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1. 기금개요

가. 설치근거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8조의2(공유재산관리기금)

나. 설치년도: 2019년

다. 재원조성

- 1) 매각·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
- 2) 대부료·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
- 3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

라. 기금용도

- 1)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- 2)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·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
- 3)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·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등

2.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지출액	경정액	증 감	비 고
합 계			31,116,920	32,116,920	-	
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확충(공유재산관리기금)			5,283,440	2,100	△5,281,340	
행정재산취득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2,100	2,100	-	심의수당
	자산취득비	405-01 자산 및 물품취득비	5,281,340	-	△5,281,340	토지매입비
재무활동 보존지출(공유재산관리기금)			25,833,480	31,114,820	△5,281,340	
보전지출	예치금	602-01 예치금	25,833,480	32,114,820	△5,281,340	예치금